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나5209 판결 [보증금반환청구]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나520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가소1854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태멘인포서브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8. 8. 16.

판결 선고 2018. 10. 11.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가소1854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조회기능 등을 갖춘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각 가맹점에 공급하는 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통신기기 도, 소매업, 서비스 가맹점유치 및 회원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VAN사(Value Added Network,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중계 통신망을 연결하여 신용카드 조회·승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신용판매 거래내역 전송, 매출전표 매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인 퍼스트데이터코리아 유한회사(이하 '본사'라 한다)로부터 DDC(Data & Draft Capture) 서비스(VAN사가 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 데이터를 기초로 가맹점의 매출 데이터를 생성하여 신용카드사로 전송하는 방식인데, 이는 VAN사가 각 가맹점으로부터 수신된 전자적 청구데이터를 신용카드사별로 생성하여 전송하는 업무(Data Capture 업무)와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매출전표를 수거·보관 및 검증하는 등의 업무(Draft Capture 업무)로 구분된다} 수행 등에 관하여 지역총괄 대리점 지위를 취득하였고, 2002. 9. 10.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카드 조회기능 등을 갖춘 단말기 및 그 부분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위 단말기를 가맹점에 임대, 설치 후 DDC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갑'은 피고이고, '을'은 원고이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DDC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손해보증금으로 3,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보험기간 2002. 9. 12.부터 2003. 9. 12.까지, 보증내용 '외상물품 대금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제4조 담보의 설정

1. 을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갑이 정하는 금액(일천만원) 이상의 지급보증이 있는 이행(상품판매대금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단, 갑이 인정하는 경우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담보, 연대보증 및 기타 상당한 재산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3. 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보로 제공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갱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15일 이전에 새로운 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최소구매수량

1. 을은 갑에게 구매주문을 할 때 월 1회, 20대를 최소 구매 기준으로 한다.

제19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갑 또는 을이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종료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대리점 제재 및 계약의 해지

2.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고,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최고 절차 없이 서면통지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한 경우

다. 피고는 2003. 9. 1.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무상 공급한 단말기 중 66대를 유상으로 전환할 것이니 2003. 9. 6.까지 단말기 대금 20,244,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다음, 2003. 9. 3. 원고에게 원고가 위 20,244,000원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1차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는 2003. 9. 9. 원고에게 피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원고의 위 계약에 따른 외상물품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같은 날 위 서울보증보험에 위와 같은 이유로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2003. 11. 28. 위 서울보증보험에 위 대금의 소멸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03. 11. 27. 원고와 이 사건 1차 계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갑'은 피고이고, '을'은 원고이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보험기간 2003. 11. 28.부터 2004. 11. 27.까지, 보증내용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위 2차 대리점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부터 위 증권 이외에 별도로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

제4조 담보의 설정

1. 을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갑이 정하는 금액(일천만원) 이상의 현금, 질권, 부동산 또는 지급보증이 있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대리점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을 갑에게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년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보증만료 10일전까지 추가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유상제품 최소구매물량

을은 갑에게 월 1회 10대 이상(연 120대)을 최소 구매 의무기준으로 한다.

제11조 임대 조건

8. 무상제품 설치 후, 목표 건수 미달시, penalty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유상전환한다.

제12조 무상임대 이행기간 및 손해배상

1. 신용카드 조회기의 무상 의무 임대기간 만료는 36개월로 정한다.
2. 신용카드 조회기의 사용연한은 4년으로 정한다.
4. 계약 해지시,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 무상 임대 제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5. 임대의무(3년) 만료전 반납 제품의 손해배상 계산은 제품 사용연한(4년)을 기준으로 정하며 출고기준 2개월부터 월 감가상각으로 계산한다.

제22조 대리점 제재 및 계약의 해지

2.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고,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최고 절차 없이 서면통지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26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갑 또는 을이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종료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마.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2017년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리점계약이 사실상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을 2017. 1. 31.까지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단말기 대금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보증금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이에 원고는 2017. 1. 26. 이 사건 보증금을 2017. 2. 6.까지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5, 6,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2차 대리점계약1) 과 관련하여, 2016. 12. 31. 위 2차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가 관리하는 가맹점이 모두 없어졌으므로, 위 2차 대리점계약은 위 무렵 사실상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 24. 피고에게 위 2차 대리점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2003. 9. 1.경 이 사건 1차 대리점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단말기를 유상으로 전환하여 그 대금인 20,244,000원을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원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대금으로 이 사건 보증금을 충당한 후 원고와 다시 이 사건 2차 대리점계약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2차 대리점계약은 원고가 위 2차 대리점계약 제4조에서 정한 새로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위 대리점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4. 11. 28. 해지되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대리점계약이 아닌 '딜러'로서 단말기 공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그 계약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가사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러한 의무는 5년의 상사시효 경과로 소멸하였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본사와 피고 사이의 지역총괄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2009. 12. 31.경 이 사건 2차 대리점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위 2차 대리점계약은 2009. 12. 31.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가 위 2차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단말기 대금 4,900,000원(단말기 35대 × 단말기 한 대당 가격 140,000원)으로 이 사건 보증금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보증금이 남지 않는다. 가사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러한 의무는 5년의 상사시효 경과로 소멸하였다.

3. 판단

원, 피고의 주장을 시간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다.

가. 이 사건 2차 대리점 계약이 2004. 11. 28. 해지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2003. 11. 27. 원고와 이 사건 1차 계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 사건 2차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2차 대리점계약과 관련하여 대리점계약서 제26조에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피고 또는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종료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2차 대리점계약이 만료한 2004. 11. 27.경으로부터 1개월 전에 원고에게 위 2차 대리점계약의 계약종료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위 일시경 위 2차 대리점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사소멸시효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2차 대리점 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1차 대리점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단말기를 유상으로 전환하여 원고에게 그 대금인 20,244,000원을 청구한 후 원고의 단말기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대금으로 이 사건 보증금을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2003. 9. 1.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무상 공급한 단말기 중 66대를 유상으로 전환할 것이니 2003. 9. 6.까지 단말기 대금 20,244,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다음, 2003. 9. 3. 원고에게 원고가 위 20,244,000원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1차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피고가 2003. 9. 9. 원고에게 피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원고의 위 계약에 따른 외상물품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같은 날 위 서울보증보험에 위와 같은 이유로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2003. 11. 28. 위 서울보증보험에 위 대금의 소멸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유상으로 전환한 단말기 대금 20,244,000원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유상으로 전환한 단말기 대금 20,244,000원으로 이 사건 보증금을 충당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한 바도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1차 대리점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증금을 받고 원고에게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갑 제3호증)을 원고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2차 대리점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 외에 별도로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유상으로 전환한 단말기 대금 20,244,000원으로 이 사건 보증금을 충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2차 대리점계약이 2009. 12. 31.경 해지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소장에서 이 사건 2차 대리점계약이 2009. 12. 31.경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지연손해금을 기산일도 2010. 1. 1.부터 구하고 있으므로, 위 2차 대리점계약은 위 일시경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06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소장에서 이 사건 2차 대리점계약이 2009. 12. 31.경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지연손해금을 기산일도 2010. 1. 1.부터 구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나, 원고가 제1심에서 2017. 9. 13.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위 일시경 위 2차 대리점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래 당심 변론 종결시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2017년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리점계약이 사실상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을 2017. 1. 31.까지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과 갑 제4 내지 6, 8, 9, 16, 21호증, 을 제1,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는 2009. 12. 31.경 피고가 본사의 지역총괄 대리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와의 이 사건 2차 대리점계약도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본사가 2009. 11. 30.과 2009. 12. 16. 피고에게 지역총괄 대리점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후 피고의 항의 등으로 피고가 본사의 지역총괄 대리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갑 제9호증,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사가 2009. 12. 31. 피고와의 지역총괄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현재도 피고와 대리점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본사로부터 2018. 7.까지 위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5. 6.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대리점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여, 이 사건 2차 대리점계약이 2009. 12. 31.경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장에서 이 사건 2차 대리점계약이 2009. 12. 31.경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은 진실에 반하는 것이고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 등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대리점계약이 2009. 12. 31.경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위 일시경 위 2차 대리점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사소멸시효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2차 대리점계약이 2016. 12. 31. 해지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2차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가 관리하는 가맹점이 모두 없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 24. 피고에게 위 2차 대리점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1차 대리점계약의 종료 이후 이 사건 2차 대리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별도로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는 점, 위 1, 2차 대리점계약은 그 세부내용을 일부 달리하나 원, 피고의 권리, 의무 등 주된 계약 내용은 동일한 점, 손해 등을 담보하는 보증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1차 대리점계약에서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보증금 지급의 효력은 위 2차 대리점계약에서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2차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보증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한으로 정한 날의 다음날인 2017. 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시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0. 1. 1.부터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2차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것은 위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후이고, 원고가 2017. 1. 26. 피고에게 위 보증금의 변제기한을 2017. 2. 6.로 정하여 최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최고일 다음날인 2017. 2. 7.부터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위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동아

판사윤원묵

판사김현곤

1) 원고는 이 사건 1차 대리점계약과 2차 대리점계약의 특정 없이 대리점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의 원고 및 피고의 주장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인정한다.